

의안번호	2211335
의 퇴 인	김희정의원
회 답 일	2025. 7. 15.
추계번호	25B24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의2(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계획(이하 이 조에서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26조의3(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신설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위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함(제1항) 1.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의 서식지 및 개체수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 유인요소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 충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6조의4(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과 공항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지방항공청장, 공항운영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26조의5(조류충돌예방·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함(제1항) 1.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운영자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및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6조의2(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6조의3(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신설	· 미대상 -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¹⁾ - 개정안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공항운영자로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6조의4(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 미대상 -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²⁾ ※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통상 20명 이내의 위원 ³⁾ 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에 한해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규정하는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26조의5(조류충돌 예방·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	· 미대상 -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⁴⁾ - 개정안에 따른 조류충돌예방·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체는 공항운영자로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제4조(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협의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상세 사유

□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26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에 따라 각 공항의 운영자 등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⁵⁾,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성격의 조류충돌 예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음
- 다만,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등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2. 지방항공청
3. 공항운영자
4.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항공사
5. 공군
6. 환경부
7. 조류와 야생동물 전문가 등

3) 다만, 2025년 6월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총 31명(위원장 포함 국토교통부 공무원 5명, 지방항공청 공무원 3명, 공항운영자 2명, 항공사 13명, 공군 및 해군 3명, 환경부 1명, 조류와 야생동물 전문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4)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국적사와 외항사), 공군부대, 야생동물학회의 야생동물담당자, 조류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